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3. 8 선고 2022가단10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이창희

변 론 종 결 2023. 1. 11.

판 결 선 고 2023.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9.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21. 12. 23. 접수 제528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D은 1993. 12. 29.경 원고와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2) D이 2021. 12. 23.경 신용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22.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차전405호로 신용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2. 2. 26. 확정되었다.

3) 2022. 4. 13.을 기준으로 원고의 D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은 원리금 합계 16,455,581원 및 원금 15,931,087원이다.

나. D과 피고의 증여계약 등

1) 피고는 1974. 12. 6. D과 혼인하였고, 2022.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호협471호 협의이혼절차를 통하여 이혼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 여관”의 부지 및 건물로 1987. 12. 9.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21. 12. 23. 피고 명의로 2021. 9. 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 제5,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원고가 D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D이 2021.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거나, 이혼에 앞서 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제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87. 12. 9. 직후인 1988. 2. 23.부터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E 여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해 온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개설할 무렵부터 피고와 D은 별거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은 2010. 11. 1.경부터 김해시 F, G호에서 H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 2021. 11. 1.경 폐업을 하였던 점, ③ 2015.경 이후 피고가 D으로부터 454,419,000원을 송금받은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D에게 636,063,983원을 송금하여 준 점,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원리금을 피고가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그 명의를 피고에게 회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D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만 그 등기원인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별지